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0호 및 제182호로 2023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2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의 구비 분담금, 법정 필수 경비, 필수 추진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의 편성을 위한 예산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요청함.

3. 주요내용

가.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1,006,489,950	845,581,136	160,908,814	19.03
일반회계	970,586,632	813,694,342	156,892,290	19.28
특별회계	35,903,318	31,886,794	4,016,524	12.60
의료급여	683,646	544,000	139,646	25.6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4,200	0	54,200	순증
주 차 장	33,587,505	30,547,502	3,040,003	9.95
건축안전	1,577,967	795,292	782,675	98.41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156,892,290천원

1)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970,586,632	813,694,342	156,892,290	
지방세 수입	193,111,153	216,834,446	△23,723,293	
보통세	192,395,581	216,118,874	△23,723,293	
지난년도 수입	715,572	715,572	0	
세외수입	81,660,367	81,660,367	0	
경 상 적 세외수입	67,219,150	67,219,150	0	
임 시 적 세외수입	9,495,937	9,495,937	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945,280	4,945,280	0	
지방교부세	17,396,000	17,396,000	0	
조정교부금 등	86,532,775	86,532,775	0	
자 치 구 조정교부금	86,532,775	86,532,775	0	
보 조 금	373,834,827	365,746,168	8,088,659	
국고 보조금	215,524,800	212,851,977	2,672,823	
시·도비 보조금	158,310,027	152,894,191	5,415,83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8,051,510	45,524,586	172,526,924	
보전수입 등	218,051,510	45,524,586	172,526,924	○ 순세계잉여금: 153,436,667 ○ '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19,090,257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156,892,290천원

● 정책사업비 ----- 35,425,596천원

※ 주요 사업 편성 내역

동청사 시설보수(여의동, 영등포본동, 신길7동)(자치행정과)	97,820 천원
영등포동 자치회관 다목적 공간 조성(자치행정과)	230,858 천원
지역문화축제 지원(문화체육과)	22,000 천원
동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지원(문화체육과)	54,000 천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 시설 건립(문화체육과)	2,274,000 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지역경제과)	2,000,000 천원
선유도서관 리모델링 및 문래도서관 환경개선(미래교육과)	1,502,000 천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복지정책과)	42,000 천원
하정어린이집 리모델링(보육지원과)	433,031 천원
산후조리경비 지원(보육지원과)	982,000 천원
경로당 중식비 지원(어르신장애인과)	455,700 천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및 집행 정산인 수당지원 (어르신장애인과)	153,000 천원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어르신장애인과)	173,000 천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어르신장애인과)	121,380 천원
빗물관리시설(띠녹지)조성(푸른도시과)	500,000 천원
여의도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푸른도시과)	500,000 천원
반지하주택 차수시설 설치(치수과)	200,000 천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교통행정과)	144,000 천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교통행정과)	31,000 천원
공동주택 관리지원(경로당 개보수)(주택과)	200,000 천원
경부선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도시계획과)	300,000 천원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도시계획과)	50,000,000 천원
손해배상금(조선선재 착공반려 관련)(건축과)	12,083,446 천원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건축과)	700,433 천원
의회 청사 관리(회의실 조성)(의회사무국)	77,000 천원

- '22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20,674,577천원
- 예비비 ----- 16,097,366천원
 - ▶ 일반예비비: 2,800,000천원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297,366천원
- 행정운영경비----- 899,164천원
 - ▶ 인건비: 614,416천원
 - ▶ 직급보조비: 302,446천원
 - ▶ 연금부담금 등: △17,698천원
- 기금전출금 및 예탁금----- 83,795,587천원

나. 특별회계 ----- 4,016,524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139,646천원

- 세입
 - ▶ 순세계 잉여금: 108,312천원
 - ▶ 보조금 사용잔액: 31,334천원
- 세출
 - ▶ 보조금 반환금: 139,646천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 54,200천원

- 세입
 - ▶ 국고보조금: 54,200천원
- 세출
 - ▶ 시설비: 54,200천원

■ 주차장 특별회계 ----- 3,040,003천원

● 세입

- ▶ 순세계 잉여금: 2,983,356천원
- ▶ 보조금 사용잔액: 56,647천원

● 세출

- ▶ 인력운영비: 10,962천원
- ▶ 예탁금: 2,971,203천원
- ▶ 보조금 반환금: 57,838천원

■ 건축안전 특별회계 ----- 782,675천원

● 세입

- ▶ 순세계 잉여금: 731,958천원
- ▶ 보조금 사용잔액: 50,717천원

● 세출

- ▶ 건축물 안전점검 등 사업비: 725,317천원
- ▶ 보조금 반환금: 57,358천원

5.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675,233,123	577,236,283	97,996,840	16.98
일반회계	639,329,805	545,349,489	93,980,316	17.23
특별회계	35,903,318	31,886,794	4,016,524	12.60

나.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639,329,805	545,349,489	93,980,316	17.23
복 지 국	462,370,178	436,059,455	26,310,723	6.03
복지정책과	28,774,828	23,898,575	4,876,253	20.40
생활보장과	79,036,595	76,360,472	2,676,123	3.50
보육지원과	158,151,390	148,469,479	9,681,911	6.52
아동청소년과	17,181,179	15,897,499	1,283,680	8.07
어르신장애인과	179,226,186	171,433,430	7,792,756	4.55
생활환경국	73,312,001	71,222,603	2,089,398	2.93
가로경관과	1,130,770	1,130,597	173	0.02
청 소 과	56,674,797	56,314,346	360,451	0.64
환 경 과	2,962,735	2,903,949	58,786	2.02
푸른도시과	12,543,699	10,873,711	1,669,988	15.36
안전교통국	30,735,517	29,340,079	1,395,438	4.76
도시안전과	5,091,656	4,512,291	579,365	12.84
도 로 과	14,268,197	14,237,496	30,701	0.22
치 수 과	7,683,766	7,088,034	595,732	8.40
교통행정과	3,651,783	3,462,143	189,640	5.48
주차문화과	40,115	40,115	0	0
도 시 국	72,912,109	8,727,352	64,184,757	735.44
주 택 과	1,426,140	1,211,261	214,879	17.74
도시계획과	56,111,516	5,510,717	50,600,799	918.23
주거사업과	1,807,355	1,260,368	546,987	43.40
건 축 과	13,039,608	242,408	12,797,200	5279.20
부동산정보과	527,490	502,598	24,892	4.95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35,903,318	31,886,794	4,016,524	12.60
생활보장과	683,646	544,000	139,646	25.67
환 경 과	54,200	0	54,200	순증
도시안전과	478,820	478,820	0	0
주차문화과	33,108,685	30,068,682	3,040,003	10.11
건 축 과	1,577,967	795,292	782,675	98.41

라.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1) 일반회계

【 복지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462,370,178	436,059,455	26,310,723	6.03% 증
복 지 정 책 과	28,774,828	23,898,575	4,876,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99,940 ◦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72,834 ◦ 사랑나눔 푸드뱅크, 마켓 운영 2,400 ◦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64,800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52,840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61,1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3,603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70,536
생 활 보 장 과	79,036,595	76,360,472	2,676,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형성지원사업 1,009,086 ◦ 노숙인 관리 2,000 ◦ 인력운영비 22,476 ◦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1,009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1,552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보육지원과	158,151,390	148,469,479	9,68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 등 납부 32,00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676,313 ◦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운영비 지원 7,580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77,886 ◦ 어린이집 환경개선 △25,952 ◦ 어린이집 IoT기반 환경센서 지원사업 7,000 ◦ 하정어린이집 임시이전 433,031 ◦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326,484 ◦ 서울형 키즈카페 타당성조사 용역 20,000 ◦ 여성소통문화공간 운영 13,200 ◦ 산후조리경비 지원 982,000 ◦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312,0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955,492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20,649
아동청소년과	17,181,179	15,897,499	1,283,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600 ◦ 아동급식 지원 57,600 ◦ 대림1동 다목적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105,974 ◦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7,30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5,696 ◦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5,250 ◦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8,820 ◦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1,800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314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2 ◦ 가족학교 운영 469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129,600 ◦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1,838 ◦ 국고보조금 반환금 293,210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0,147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어르신 장애인과	179,226,186	171,433,430	7,792,7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운영지원 964,363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52,662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112,960 ◦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61,184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4,571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60,590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04,388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구비추가) 198,000 ◦ 노인상담센터 운영 △206,725 ◦ 노인복지서비스 근무자 심리안정지원 운영 △23,550 ◦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4,800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42,000 ◦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10,800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38,218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운영 924,202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73,488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5,875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334 ◦ 농아인쉼터 운영 276 ◦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7,282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16,038

【 생활환경국 】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73,312,001	71,222,603	2,089,398	2.93% 증
가 로 경 관 과	1,130,770	1,130,597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3
청 소 과	56,674,797	56,314,346	360,4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청결도 향상 26,520 ◦ 폐기물 처리 299,214 ◦ 청소장비 관리 3,060 ◦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 △18,9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9,915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642
환 경 과	2,962,735	2,903,949	58,7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35,0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19,632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54
푸 른 도 시 과	12,543,699	10,873,711	1,669,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개선 36,000 ◦ 공원 내 테마정원 조성 100,000 ◦ 공원 내 그늘막 설치 67,600 ◦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 60,000 ◦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 27,000 ◦ 녹지대 수준 향상 · 관리 200,000 ◦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 30,000 ◦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40,000 ◦ 빗물관리시설 확충 500,000 ◦ 여의도 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500,000 ◦ 녹지 관리 봉사대 운영 50,0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9,822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9,566

【 안전교통국 】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30,735,517	29,340,079	1,395,438	4.76% 증
도 시 안 전 과	5,091,656	4,512,291	579,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64,672 ◦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390,000 ◦ 인력운영비 21,586 ◦ 국고보조금 반환금 73,493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9,614
도 로 과	14,268,197	14,237,496	30,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701
치 수 과	7,683,766	7,088,034	595,7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200,000 ◦ 빗물받이 청소의날 운영 40,080 ◦ 하천 및 유수지내 시설물 보수 공사 350,000 ◦ 국고보조금 반환금 3,650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2
교 통 행 정 과	3,651,783	3,462,143	189,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144,000 ◦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 31,000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640
주 차 문 화 과	40,115	40,115	0	변동사항 없음

【 도시국 】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72,912,109	8,727,352	64,184,757	735.44% 증
주 택 과	1,426,140	1,211,261	214,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00,000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879
도 시 계 획 과	56,111,516	5,510,717	50,600,7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300,000 ◦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 300,000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99 ◦ 기금전출금 50,000,000
주 거 사 업 과	1,807,355	1,260,368	546,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40,000 ◦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 419,796 ◦ 민간재정비 사업 추진 14,168 ◦ 영등포 재개발 · 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62,020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3
건 축 과	13,039,608	242,408	12,797,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8,100 ◦ 건축행정 지원 12,083,446 ◦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법창 설치 지원사업 700,433 ◦ 총괄건축가 자문 운영 5,190 ◦ 국고보조금 반환금 22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
부 동 산 정 보 과	527,490	502,598	24,8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24,750 ◦ 국고보조금 반환금 37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5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총 계	35,903,318	31,886,794	4,016,524	12.60% 증
생활 보장 과	683,646	544,000	139,6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반환금 69,823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9,823
환경 과	54,200	0	54,20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4,200
도 시 안 전 과	478,820	478,820	0	변동사항 없음
주 차 문 화 과	33,108,685	30,068,682	3,040,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운영비 10,962 ◦ 예탁금 2,971,203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7,838
건 축 과	1,577,967	795,292	782,6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424,383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지도시행 5,035 ◦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295,899 ◦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47 ◦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311

6. 검토내용

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72억 3천 6백만원 대비 17%인 979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6,752억 3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9억 8천만원 증액된 6,393억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359억 3백만원임.

나. 세출예산 국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

【복지국】

-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4,366억 3백만원 대비 6.1%인 264억 5천만원 증가한 4,630억 5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623억 7천만원, 특별회계 6억 8천 4백만원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주요 증감 요인은
 - 복지정책과는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총 2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사업**은 광복회 사무실을 구 소유 건물로 무상 임차하게 되어 사무실 임차료·보증금 등 1억 1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사업비로 4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천 5백만원 감액하였으며,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5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생활보장과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가입자가 일정금액을 은행에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비**는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0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보육지원과는 구립어린이집(영이어린이집) 국유지 5회차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 3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는 보육료 지원단가 상승 등에 따라 36억 7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인 하정 어린이집 임시이전비는 하나금융공익재단 기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 4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비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개편시기가 당초 '23년 7월에서 '24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시설운영비로 3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브라이튼여의도에 조성되는 서울형 키즈카페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후조리경비 지원비 9억 8천 2백만원,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비 3억 1천 2백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음.
-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아동급식지원비 부족분 및 지원기준 확대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비 5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림1동 다목적공동이용시설 내부 기능보강 등 비용 및 영등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전 등으로 대림1동 다목적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비 1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자신의 손자녀에게 돌봄을 수행할 시 지원 비용으로 1억 8백만원, 양육공백 발생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권 지원비로 2천 2백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어르신장애인과는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서 경로당 중식지원비로 4억 5천 6백만원 등 총 9억 6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서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라 1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후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로 1억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는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부담금 결정액 최종통보에 따라 6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9억 4백만원 증액하였으며,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 소득기준 상관없이 관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한 영등포형 어르신일자리 지원비 및 중식도우미 인원 추가모집에 따른 활동비 추가 지원으로 1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상담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를 2억 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외부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4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4천 4백만원 대비 26%인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6억 8천 4백만원으로,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7~9쪽 자료를 참고(특별회계는 13쪽)

【생활환경국】

-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712억 2천 3백만원 대비 3%인 21억 4천 4백만원 증가한 733억 6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33억 1천 2백만원, 특별회계 5천 4백만원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요인은
 - 청소과는 가로 청결도 향상사업에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는 도시청결 사업으로 담배꽂초 수거보상금 지급 등 2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 2억 9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환경과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 1,000가구 대상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구매 및 설치비로 3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푸른도시과는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전용 조명 미설치로 인하여 이용객의 이용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명탑 설치비 3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내 테마정원 조성은 특색 있는 테마정원을 조성하여 코로나블루 등 심신이 지친 구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공원 내 그늘막 설치비 6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공원시설의 청소 및 환경관리를 통해 보건위생 증진과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서 원예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적인 삶에 활력을 주기 위한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비**
2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테마화단 재조성 등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태풍 및
폭우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3천만원 증액하였고, 2001년 조성되어 노후화된 여의나
루벽천 재가동을 위해 수중모터 교체 등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
지관리사업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은 서울시 “2023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됨에 따
라 **띠녹지형 빗물정원 조성**을 위하여 5억원 증액하였고, 보도상 지
상기기 미관개선(2021)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5억원을
여의도 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용도변경 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노선 띠녹지 및 가로녹지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녹지 관리**
봉사대 운영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 신규 설치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10쪽 자료를 참고(특별회계는 13쪽)

【 안전교통국 】

-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598억 8천 8백만원 대비 7.4%인 44억 3천 5백만원 증액된 643억 2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07억 3천 6백만원, 특별회계 335억 8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 도시안전과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와 구민홍보 강화로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및 지방비 분담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저지대 주민 풍수해보험 지원사업비 6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밤명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에서 지능형CCTV를 설치하기 위한 2억 4천만원, 긴급상황 시 경찰·소방 등 시민안전 관계부처에서 신속하게 우리 구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인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비 1억 5천만원, 총 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치수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가 시급한 가구 등에 우선 설치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비를 2억원 증액하였으며, 침수예방과 빗물받이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직능단체 등 주민이 참여하는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림보도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도림보도육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계단 및 징검다리 설치를 위하여 하천 및 우수지내 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통행정과는** 관내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1억 4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1차 배부 수량이 전량 소진됨에 따라 대기자 누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으로 3천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0억 6천 9백만원 대비 10.1%인 30억 4천만원이 증액된 331억 9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9억 7천 1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11쪽 자료를 참고(특별회계는 13쪽)

【도시국】

○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95억 2천 3백만원 대비 682.2%인 649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744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729억 1천 2백만원, 특별회계 15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주요 증감 요인**은

-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보수·보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공동주택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지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계획과는 경부선 지하화 시 지상 구간 및 주변 일대에 대한 선제적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중앙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계획 단계에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준공업지역 총량제 등으로 인해 경직되게 관리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입찰이 2차례 유찰(1차: 무응찰, 2차: 단독응찰)됨에 따라 용역비를 추가 확보하여 우수업체 참여 유도 및 조속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수립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거사업과는 서울시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모아타운, 신속 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사전기획 공공재개발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및 기초조사 용역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비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총 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재정비 사업추진에서는 정비계획 추진을 위한 등기우편 발송비용으로 총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하였던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상설 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6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건축과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당산동4가 90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2017~2019년에 걸쳐 원고 씨에스로지스(주)의

착공신고를 4회 반려 처분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유로 '21년 11월경 원고는 이와 같은 집행기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지연(2년)에 따른 손실금액 약 1)100억원 및 이자 약 22억원의 배상금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패소, 이에 배상금 지급에 대한 이자가 연12%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 최소화를 위해 민사소송 배상금 120억 8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침수대비 '23년 2월~5월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비 7억원을 증액하였고, **총괄건축가 자문 운영비**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비**는 노후 민간 건축물 위험요인 사전 방지를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비 4천 4백만원 등 **총 4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및 지도 시행사업**은 기존 건축사(전문인력)의 의원면직('22.12.12.)에 따른 필수 전문인력의 결원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필수 전문인력 채용 전까지 市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하여 기술 검토 후 수당지급을 하기 위해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3종시설물 사고 발생 시 긴급 보수·보강과 복구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비** 2억 9천 6백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음.

- **부동산정보과는**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 교체사업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사업비**로 2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1) 임대료 85.8억원, 공사비 2.2억원, 토지재산세 0.5억원, 종부세 8.4억원, 개발부담금 2.8억원, 설계변경 0.3억원

- 건축안전특별회계(건축과)는 기정예산 7억 9천 5백만원 대비 98.4%인 7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15억 7천 8백만원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등 사업비 7억 2천 5백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천 7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12쪽 자료를 참고(특별회계는 13쪽)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대상: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 변경요구액: 509억 5천 3백만원
- 변경사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수령에 따른 수입·지출 계획 변경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정책사업의 2/10를 초과하여 금액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당초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50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509억 5천 3백만원 증액 변경함에 따라 560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 증감액은 509억 5천 3백만원으로 전입금 500억원, 이자수입 9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 지출 증감액은 509억 5천 3백만원으로 예치금 509억 5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함.

라. 검토의견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과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타당성,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3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